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영상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 등)의 제작·반포를 추가하고, 촬영물 등 삭제지원 대상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합성물, 가공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임(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제1항).

II. 검토의견

안 제2조제1호의3에서는 “사이버폭력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이외에 “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·반포”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바,

딥페이크영상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 등)의 정의가 유사 입법례¹⁾ 등을 고려할 때 명

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대상에 촬영물, 음성물 외에 “영상물”도 포함되도록 추가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(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)
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“합성영상등”이라 한다)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,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